

#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관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발의일자 : 2021년 1월 15일

○ 발 의 자 : 배지숙 · 김원규 · 김지만 · 김태원 · 박갑상 · 이만규 ·  
홍인표 ·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8일

## 2. 제안이유

○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수준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중요한 시정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화재, 범죄, 폭서·혹한, 위생문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아동 주거지원제도는 더욱 절실함.

따라서, 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과 주거복지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주거정책과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거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의 용어를 관계 법령과 입법취지 등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운영과 관련 정책의 추진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과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 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여,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이하 “아동 주거지원 등” 이라 함)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및 제3조)
-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전문기관 의뢰의 근거 등을 명시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계획의 내용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안 제4조)
-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아동 주거지원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지원, 주택의 수리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같은 시설중심 지원사업과 함께 주거비 지원사업과 긴급 지원사업,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한편, 보다 전문성있는 사업의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안 제5조)

-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범죄·화재·혹서·혹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필요한 ‘아동 주거기준’ 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시장이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본계획, 주거지원사업, 아동 주거기준 등의 아동 주거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아동 주거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되, 시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현재의 주거정책의 행정체계가 유지될수 있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민간단체와의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주거기본법」, 「아동복지법」,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등)
-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한 주거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보다 더 큰 아동에게 화재, 범죄, 폭서·혹한, 위생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원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 총칙과 관련하여 (안 제1조 ~ 제3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주거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의 용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과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등은 아동의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음.

### □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 및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안 제4조 ~ 제6조)

- 안 제4조에서는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전문기관 의뢰 근거 등을 명시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계획의 내용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해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동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고, 아동 주거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안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적정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7조~제9조)
  - 안 제7조에는 아동의 주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아동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아동 주거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동 주거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되, 아동복지 전문가가 포함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 기타

-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아동 주거지원 사업의 시행과 아동 주거기준의 설정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한 주거지원을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취약 아동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가족 등의 복지업무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주관부서와 유관부서가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협력적 행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